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정 환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동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제300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자 작년 7월부터 12월 납기분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기한을 금년 6월 납기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